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김 용 일**

A Study on the Rationale of 5.31 Educational Reform

Yong-Ill KIM

목 차

Abstract	III. 시장의 원리와 교육의 미래
I. 서 론	IV. 결 론
II. 창의력 배양과 질적 수월성	참고문헌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ationale of 5.31 Ecucational Reform(Agenda). Examining the logic of the agenda, we can acknowledge that the objectives of it are enhancing the students' creativity and boosting the excellency of eucational system. The proponents of reform agenda seem to assume that the invisible hands can classify a high quality education provider and select excellent schools. In this context, we conclude that the rationle of reform agenda is the principle of market. However, we must not overlook considering the crucial principle of public education. And we should remember that there are two antagonistic principles in managing eductional system. One is equity, and the other is excellence. If we emphasize the former, then we must not render our education to the market. On the other hand, if we follow the latter principle, we can not eschew some breakdown of the equity.

* 이글은 1996년 12월 18일에 개최된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임.

** 한국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교육학전공)

I. 서 론

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우리는 흔히 '5.31 교육개혁'이라 한다. 그것은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로 줄임)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교육개혁안을 발표한 데서 연유한다. 우리가 그다지 주목하지 않는 제 1차 보고는 '94년 9월 5일에 이루어져 5.31 교육개혁안은 사실 제 2차 보고였다. 그런데 여기에 현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의 골격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후 제 3차 보고내용('96년 2월 9일)과 제 4차 보고내용('96년 8월 20일)까지 포함하여 통상 '5.31 교육개혁(안)'이라 부르고 있다.

무릇 모든 교육개혁안은 입안(마찬가지로 개혁) 주체의 철학이 반영되어 있는 일정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를 교육개혁 구상의 배경·목적과 목표·구체적인 개혁방안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논리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국민이나 개혁관련 당사자들의 지지(support)를 이끌어내는 한편,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개혁 추진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난관 내지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일종의 정당화기제로 사용된다. 이렇듯 '위로부터 개혁'이든지 또는 그 반대이든지 간에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rationale)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개혁에 냉소적인 집단, 저항하는 집단 등을 설득하고, 지지하는 집단을 개혁의 수행에 강력히 동원한다는 점에서 어찌보면 정당화논리가 교육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할 수도 있다.

이 글은 5.31 교육개혁안에 담긴 정당화논리를 분석하여 그것이 갖고 있는 교육실천 면에서의 함의(含意)가 무엇인가를 밝혀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 II장에서는 교육개혁 구상의 배경·목적과 목표·구체적인 개혁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고찰을 통해 5.31 교육개혁안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혁의 지표가 '창의력 배양'과 '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임을 밝히고 있다. 제 III장에서는 표방된 개혁의 지표를 떠받이고 있는 정당화논리가 다름 아닌 '시장경제의 원리'(이하 '시장의 원리'로 줄임)임을 논증하고, 그것이 갖는 교육실천의 측면에서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끝으로 제 IV장 결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개혁이 초래할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II. 창의력 배양과 질적 수월성(秀越性)

교개위는 현재 진행중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문명의 대전환'으로 묘사하면서, 그 변화의 요체를 '정보화 사회'·'지식사회'로 파악하고 있다. '산업문명'으로의 전환기에서 보듯이 역사의 대전환기에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한 자가 역사의 선두주자가 되었던 것과 마찬자리 우리도 대담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한 교육개혁, 아니 ‘교육혁명’을 통해 세계 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신한국’을 창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은 “새로운 문명의 원동력인 새로운 정보, 새로운 과학기술, 새로운 문화의 창조를 담당할 사람을 기르는 성업(聖業)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요소”(교개위, 1995: 4)가 된다.

‘정보화·지식사회’를 한마디로 ‘정보와 지식이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사회’로 정의하고 있는 교개위는 미래 사회환경의 변화와 교육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사회와 국가의 힘과 부(富), 개인의 삶의 수준은 기술·정보·지식·문화 등 지적 자산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미래 문명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바로 교육의 틀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고덕의 강조는 원저자, 교개위, 1995: 5)

정보와 지식, 다시 말해 ‘지적 자산’이 국가의 힘과 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국민의 학습능력과 창조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1) 국민의 학습능력이라는 표현에서 종전의 학교 위주의 교육만이 아니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고, 2) 같은 맥락에서 과거 산업문명 시대에 요구되던 것과는 다른 개인의 능력이 바로 ‘창조력’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 교개위는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거로 ‘정보화 사회의 교육적 의미’를 다음의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교개위, 1995: 6). 첫째는 정보·지식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교육 연한의 상향 조정이다. 국민 개개인이 받아야 할 교육연한이 장기화 되는 추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개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업에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가르치고 배우는 ‘생업교육’(生業教育)의 상향조정이다. 현재 중등교육 수준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앞으로는 고등교육 수준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셋째로 성인의 재교육(계속교육 내지 평생교육)의 중요성이다. 이는 정보와 지식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사회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결국 교육에서 종전의 시간이나 공간 개념이 파괴¹⁾되는 이른바 ‘열린교육체제’의 성립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끝으로 세 번째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교수방법·교육운영 등의 변화에 대한 지적이다. 첨단 멀티미디어 정보통신기술이 교육에 도입됨으로써 교사의 역할, 교실의 개념, 교육방법, 교육과정 등이 종전과는 아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보와 지식의 양이 급증하고 또한 급변할 때, 학교교육 단계에서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의

1) 종전의 교육에 대한 생각이 ‘학교(교실)에서 학령 아동을 가르치는 활동’으로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표현이 가능하다.

연한이 길어지고 학교교육을 떠난 시점에서도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대개 공감하는 바이다. 또한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교육매체의 변화, 나아가 교육방법의 변화를 통해 종전의 교육공간을 크게 뒤바꿀거라는 진단 역시 크게 부정하기 어려운 지적이다.

다른 한편, 교개위는 미래 사회변화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으로 ‘세계화 시대의 도래’를 언급하고 있다.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이 지구를 ‘지근(至近)의 촌락’으로 바꾸고, 이념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 전 세계는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고덕의 강조는 원저자, 교개위, 1995: 3)이 되었다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 및 교통의 발달과 이데올로기 장벽의 붕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개위는 이러한 변화의 중대한 현실적인 의미를 정치·문화의 영역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에서 찾고 있다. 다시 말해, 교개위는 세계화라는 교육환경 변화가 갖는 중요한 의미를 ’95년에 출범한 WTO체제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다. ‘경제에 관한 한 국경이 없어진 세상’이란 표현은 경제 영역에서 국가간 경쟁이 가속화됨을 의미하는 것으로,²⁾ 교개위는 이러한 변화의 교육적 의미를 아래의 네 가지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세계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육은 세계수준으로 질적 도약을 이룩해야 한다. 둘째, 세계화 시대에 우리다움을 잊지 않으면서 여러 나라와 조화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문화의식을 지닐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넷째,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교육에 있어서 자율과 분권의 원리가 실천되어야 한다.”(고덕의 강조는 원저자, 교개위, 1995: 8)

위의 논리 구성을 보면, ‘세계수준의 질 높은 교육’이 세계화 시대가 요청하는 본질적인 변화임을 알 수 있다. 경제 영역에서 국가간의 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므로 이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질 높은 인적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적 관심’은 세계화라는 강력한 교육환경의 변화가 초래할지도 모를 문제점에 대한 대응 내지 보완적 성격이 짙다.³⁾ 그런데 앞의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적 의미를 논하는 데서 ‘창조력’을 강조한 것과 관련하여,

2) 같은 맥락에서 김식현은 세계화의 경제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업의 세계화란 특정 기업의 시장이 과거에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분리되었던 것이 점차 전세계적 범위의 하나의 시장이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세계기업(Global Company)의 탄생을 의미한다. . . . 세계기업의 출현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의 완전개방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그런 압력이 우리 나라 기업에 대하여 과거와는 새로운 대응책으로서의 경영전략을 낳게 하고 . . . ”(김식현, 1995: 6).

3) 사실, ‘국제적 의사소통 능력’은 ‘세계수준의 질 높은 교육’의 한 요소로 동어반복적인 측면이 있고, ‘자율과 분권의 원리’ 역시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행정의 규제 요소를 철폐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논리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주장하는 ‘세계화 시대’가 교육에 요구하는 변화의 본질은 ‘세계수준의 질 높은 교육’으로 집약된다. 이는 교개위가 발행한 다른 자료에서 이미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질 높은 신인력 창출’(교개위, 1994: 5)이라고 보다 직접적으로 표현된 바 있다.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아래와 같은 지적은 교개위가 주장하는 교육적 대응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준다.

“・・・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을 위하여 우리의 초·중등교육은 단편적인 지식의 암기위주 교육으로부터 창의력 배양 중심 교육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대학은 지금까지의 기존지식이나 외래지식의 전수장으로부터 모름지기 과학 기술과 학문, 문화 창조의 산실로 전환되어야 한다.”(고덕의 강조는 원저자, 교개위, 1995: 8~9)

이렇게 보면, ‘지식·정보화사회’의 교육적 대응방안은 ‘창조(의)력 배양 중심 교육’이며, ‘세계화사회’의 교육적 대응방안은 ‘세계수준의 질 높은 교육’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양자는 표리관계에 있다. 이는 한국교육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진단을 거쳐 그 해결책으로서 ‘新교육체제’ 수립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데서 확인된다. 교개위는 우리 교육의 총체적 문제점을 “지금까지 산업화에 기여했던 양적 성장 중심의 교육”이라 진단하면서, 그 주요 원인이 ‘암기위주의 입시교육’에 있다고 한다. 특히 ‘입시지옥 속에 묻혀버리고 있는 창의성’이라는 제하의 분석에서는 “고도의 창의력과 높은 품격의 인간상을 요구하는 미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세계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다름 아닌 ‘창조(의)력’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의 교육의 제도적 틀을 가지고서는 새로운 문명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교육 고통을 해결할 수도 없다’(교개위, 1995: 14)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교육의 틀’, ‘새로운 교육의 물길(水路)’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응답이 바로 ‘新교육체제’이라는 것이다.

III. 시장의 원리와 교육의 미래

지금까지의 주장은 ‘지식·정보화사회’가 ‘창의력’ 있는 인간형성을 요구하며, ‘세계화 시대’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간에 가속화되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질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현상에 대한 진단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의 징후를 분석하는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이므로 일견 수긍할 만한 것이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되는 ‘新교육체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또 그러한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거는 무엇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는 교개위의 계속되는 논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개위가 밝힌 ‘新교육체제’의 기본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으로 집약된다.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란 “교육공급자간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경쟁을 통해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

김 용 일

의 교육선택권을 확대하는 것"(교개위, 1995: 21~22)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은 「교육개혁의 추진원칙」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에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해서는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하여 교육의 질이 관리되도록 한다."(고덕의 강조는 연구자, 교개위, 1995: 27)라는 한층 종합적인 표현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개혁 추진원칙을 바탕으로 교개위가 설정하고 있는 교육 관련 당사자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각급학교는 자율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창출을 위하여 경쟁하도록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충분한 교육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은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현장으로부터의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현장을 변화시킨다. (중략) 정부는 각급학교 교육의 질을 평가·지원하여 그 결과를 제공하고, 교육정보 유통기반을 구축하며, 공·사립간, 사회계층간, 지역간 교육 형평성을 제고한다. 기업은 임금 및 고용관행을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바꾼다. 그리고 언론·교원단체·사회단체·학부모 단체 등은 교육개혁을 위한 의식개혁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참여한다."(고덕의 강조는 연구자, 교개위, 1995: 27)

'경제학 용어' 일색으로 위의 주장이 경제학적 논리에서 도출된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각급 학교(공장)의 활동 무대인 시장 운영의 기본원리는 말할나위 없이 '자율(유)과 경쟁'이다. 학교교육의 내용 등은 교육 서비스, 즉 상품으로 묘사되고 있다.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후견인인 학부모)이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교사는 (생산)현장에서 학생·교육내용 등(원료)을 대상으로 질 높은 학생(인적자원→상품)을 배출해 내는 생산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생산과정을 거쳐 나온 학생 역시 기업 등(교육 상품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서 자기 실현을 해야 한다. 이 때 그가 가진 능력(실질적인 가치)이 그의 상품가치를 결정할 뿐, 생산지가 어디이고 어느 시장에 내놓았느냐 하는 것 (학벌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⁵⁾ 그리고 사회 각 부문은 이러한 논리가 정당하고 수용할만한 것으로 받아들여 내면화 하고, 그러한 논리가 현실에 자리잡도록 지원해야 한다.

교육활동의 전과정이 '상품생산 → 시장에서의 가치실현 → 이윤추구'라는 시장경제의 전형적

4) 물론 교개위는 '新교육체제'의 기본특징으로 이것 말고도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교육의 정보화', '질 높은 교육' 등을 함께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 계속되는 '교육목표'와 '교육개혁의 추진원칙' 등의 논의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그 핵심은 역시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있다 할 것이다.

5) 여기서 학벌은 상품의 상표 내지 포장으로, 능력은 상품의 내용으로 파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산품에 영연히 상표가 부착되고, 농산물 조차 '원산지 표시' 등을 의무화 하여 가격을 차별화 하는 현재의 시장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학벌 등과 같은 생산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개인의 능력(상품의 실제적인 가치)만이 중요하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인 생산·유통과정으로 묘사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개혁이 ‘시장의 원리’에 의거하여 구상·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교개위의 논리대로라면, 이같은 일련의 생산·유통과정의 최종 소비자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산업’은 단순 소비재산업이라기 보다는 노동력을 생산(내지 가공)하는 일종의 생산재산업적 속성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시장(교육서비스 공급자는 학교운영자, 소비자는 학생·학부모)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장(학교는 생산자, 소비자는 기업)이기도 하다.⁶⁾ 그러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교육개혁 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그러한 방향이 과연 교개위의 말대로 우리 나라의 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일까?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각국은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80년대 이후 가속화된 각국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미래의 ‘탈산업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두어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개위가 “고도의 창의력과 높은 품격의 인간상을 요구하는 미래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질 높은 교육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다름 아닌 ‘창조(의)력’”이라고 진단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즉, 산업사회에 걸맞는 인적자원과 ‘탈산업사회’에 걸맞는 인적자원은 전혀 다른 능력과 소양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분석대로라면, 전자가 교육에서 단순기능·지식의 전수와 양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면, 후자로의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창조력과 질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데로 중심이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선진국·후진국 할 것 없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된 또 다른 배경은 ’8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겪게 되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운데 형성된 선진자본주의 국가의 ‘자유화’의 경제적 조류였다. 재정면에서 부담이 되는 기존의 ‘큰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에 따라 경제·재정정책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던 케인즈형 복지국가의 입장에 수정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교육적 의미는, 탈공업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적응이라는 지향성의 변화이며, 이를 가능케 한다고 믿어지는 ‘자유경쟁에 입각한 시장 개념의 도입’이다. 관료제도에 교육을 내맡겨 생기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쟁적 시장 개념을 도입하여 유통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시장접근법에 따라 개혁하자는 것은 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그리고 학부형과 학생은 소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최은봉, 1993: 306~307).

교육개혁론자들이 ‘시장의 원리’를 강조⁷⁾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6) 학교를 공장의 메카니즘에 비유하여 분석하려는 노력은 산업사회 출현 이후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에 의해 행해졌다. 이를 조직론에서는 학교에 대한 ‘공장모델(factory model)’이라고 한다. (Tyler, 1988).

7) 이러한 관점은 법경제학자인 박세일의 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첫째, 교육 자유의 확대이다.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의 대폭적인 교육 자율과 차치, 그리고 교육의 자유의 확대이다. 이를 통하여 ‘관료적 교육가’ 대신에 ‘기업가적 교육가’들을 대량 등장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들이 앞장서 우리 교육을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하고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소비자 주권의 확대이다. 교육에서 교육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동시에 교육생산자 사이의 자유·공정경쟁을 확대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소비자의 선호와 선택이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덕의 강조는 연구자, 박세일, 1995: 21). 박세일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 수석비서관 자격으로 교개위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데, 그의 논리가 교육개혁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의 교육체제와 그 운영을 이끌어 오던 기본논리(그것이 완전하게 실현되었는 가의 문제 여부를 떠나서)는 이들이 주장하는 논리와는 상반되는 공교육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공교육의 원리는 한마디로 특정 사회의 교육을 복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교육에서의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교육체제 운영에서도 국가관리모델을 적용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Verstegen, 1994: 366). 이러한 접근방식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는 결국 교육소비자의 요구와 무관한 교육공급자(교육행정체제, 학교 등) 중심의 교육서비스를 생산해내고, 그 결과 경쟁력이 부재한 획일적인 교육체제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육개혁 입안자들이 국가의 역할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로부터의 강력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행태나 정부에 부담이 되지만 교육재정을 GNP 대비 5%의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만 보아도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⁸⁾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겠다는 이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철학의 부재·역사적 인식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교육개혁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김기수와 정재경의 주장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하자. 그들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교육에 적용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⁹⁾면서 교육개혁에서 '시장경제의 원리'의 올바른 용법(用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육이라는 사익추구의 활동에 가담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자율적으로 경쟁 이든 협력이든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보장한다는 시장경제의 원리는,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독재권력이 독점해 있었던 것으로부터 그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 놓는다는 면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 만약 교육에서 질이 중요하다거나 다양성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교육에 있어서 사회정의라는 것·특히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것·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때는 이

그리 많지 않다. 위의 글이 그가 교개위 위원으로 활동하기 직전에 특정 연구단체를 통해 발표되었다는 사실 또한 유의할만한 대목이다.

8) 오히려 이들은 교육개혁을 위한 정부의 통일적인 기능을 염두에 두면서 '인적자원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제 신설'을 건의하고 있다. 그들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위주의 국가발전 전략이 산업화 시대에 알맞는 전략이었다면, 지식·정보가 국가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는 . . .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 능력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며,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 있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부 차원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다. . . . 따라서 정부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교육·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을 조정·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신설하여 . . ." (교개위, 1996a: 91).

9) 이들은 ". . . 만약 시장경제의 원리를 단순히 자유경쟁의 원리라 보고, 이 경쟁의 원리가 교육의 다양성이나 질적 제고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여기서 경제주의의 또 하나의 오류를 본다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제한된 자원, 다시 말해서 희소자원을 놓고 두 사람 이상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경쟁의 유일한 행태라고 가정하기 쉽다. . . 그러나 많은 경우 경쟁 보다는 협력이, 즉 서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는 것 보다는 담합이나 경쟁외적 수단에 의한 독점 또는 공점을 훨씬 더 매력적인 옵션이라 한다. 이것은 시장에서 사익을 추구하면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사인(私人)들의 행동 원리가 반드시 '자유경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김기수·정재경, 1995: 86~87).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시장경제의 원리를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고 이 원리를 보완하거나 극복하는 방안을 알아보지 않으면 안된다.”(고딕의 강조는 연구자, 김기수·정재걸, 1994, pp.88~89).

이들이 보기에도 교육개혁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과거의 왜곡되었던 교육적 경험, 즉 국가에 의한 교육의 독점을 해소한다는 면에서만이 그 정당성 내지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교육의 독점은 교육운영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상실케 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원리’가 이를 해소하는데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지의 핵심은, 교육개혁 입안자들이 주장하는 ‘교육의 질적 수월성의 추구’, ‘다양성’,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한 형평성’(교개위, 1995: 27) 등의 개혁의 지표는 오히려 ‘시장의 원리’와는 무관하거나 그에 반한다는 지적에 있다 할 것이다.¹⁰⁾

현 정부는 출범에서부터 ‘문민정부’임을 내세워 과거의 정권(특히, 군사정권)과의 차별화, 즉 역대 군사정권과의 단절을 강조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개혁에 주력하였다. 교육개혁이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다는 점 말고도, 이렇게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장의 원리’에 의거한 교육개혁 방안인데, 이는 사실상 정권 차원의 ‘단절’(현 정권의 정당성·개혁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역대 정권 유지해 온 교육정책의 공과를 면밀히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는 가운데 성안되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6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적어도 명분상 “교육적으로 약자”的 입장을 고려하는 공교육의 원리”를 표방해 왔다. 이는 헌법 제 31조 제 1항의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 라든지 ‘고교평준화정책’ 등으로 표현되고,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에 강력히 개입하였다. 통제만 있고 지원이 결여되었다는 등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내세운 ‘평등지향적 교육정책’은 대다수 국민들의 암묵적인 지지¹¹⁾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는 과거의 교육적 불평등을 시정해 줄 촉진자로 받아들여졌고, 교육적 불평등의 해소가 곧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로 이해되는 한에서 국가의 교육에 대한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역대 정권 역시 교육에 대한 경제주의적 관점을 강하게 고수해 왔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실 5.31 교육개혁안의 경제주의는 역대정권과 차이가 없으며,¹²⁾ 그 이론적 기초는

10) 이들은 또 다른 곳에서 5.31 교육개혁이 이른바 ‘경제주의’에 터하고 있음을 자적하고, 그것이 가져 올 결과를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경제적 고려에서 도달한 결론이나 독단에 근거해서 교육을 이렇게 고쳐라 저렇게 고쳐라 하는 경제주의는, 경제에 이해관계를 대고 있는 권력자나 다른 사회세력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의 기세가 당당하고, 심지어 교육자들 앞에 군림하는 태도마저 취할지도 모르나, 그들은 교육자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관심사가 무엇이고 교육활동이 진실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자와 아이들의 “교육적”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 밖에 주지 않는다.”(김기수·정재걸, 1994: 85).

11) 이러한 교육정책의 원칙은 제 3공화국에서 확고하게 천명되었다. 당시 교육기회가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제약되던 경험에 비추어 그러한 특혜를 갖지 못하였던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정책에 대해 암묵적인 동의를 표하였던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고교평준화 정책에 가장 강력히 반발하였던 세력이 당시 세칭 ‘명문고등학교’ 출신자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발전교육론’으로부터 가져 온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에 대한 경제주의가 곧 바로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발상으로 이어질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동일하게 도구주의적 교육관, 즉 경제주의에 의거하면서도 5.31 교육개혁안에는 ‘시장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관철된 반면, 과거의 정권은 ‘공교육의 원리’에 입각한 평등지향적 교육정책을 고수해 왔던 것이다.

바로 이 대목에서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가 갖고 있는 교육실천 면에서의 의미를 추출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5.31 교육개혁안은 ‘시장의 원리’를 내세워 종전의 평등지향적 정책을 포기하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속성상 명시적으로 표현은 않고 있지만, 국가의 (교육)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여나가면서, ‘시장의 관련당사자들’의 룰(rule)에 따른 자율과 경쟁에 맡긴다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정보화·세계화 시대의 걸맞는 교육적 대응,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달성할 수 있고, 이는 곧 바로 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져 결국 ‘경쟁이 날로 가속화되는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 ‘교육적 약자’¹³⁾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동원하던 국가의 정책수단은 줄여나가는 반면, 시장에서 그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¹⁴⁾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였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둘러싼 정치과정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교육적 약자’인 학부모·교사 등의 관련당사자를 참여시킨다는 교개위의 개혁안은 의사결정권을 독점해 온 ‘교육적 강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원안과는 달리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퇴색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김용일, 1996b). 개혁안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는 얼만든지 발견할 수 있는데, 사정이 이럴진대 ‘교육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정책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실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창의력, 질적 수월성’이란 이러한 의중을 감추고, ‘교육산업’의 최대(종) 고객인 기업 위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려는데 동원된 개념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화논리의 더욱 큰 문제는 개혁안대로 교육현실이 바뀌게 되더라도, 그들

- 12) 교개위가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이 경제·정치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인간자본론’(human capital theory), ‘정치발전론’(political development theory) 등의 ‘발전교육론’적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드러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 나라가 이만큼의 경제발전을 이루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받은 인적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전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이처럼 우리의 교육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제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 . .”(고덕의 강조는 원저자, 교개위, 1995: 11)
- 13) 여기서 ‘교육적 약자’란 현재의 조건에서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성이 많은 사회계층·교육관련집단 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 14) 경쟁의 원리의 적용은 경쟁의 조건과 공정한 룰을 마련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유상덕의 지적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 . . 5.31 교육개혁정책은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 주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 부문의 자율적 노동조합 활동(해당 주체들의 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교섭 등을 의미함·연구자 주)을 억압하면서 교육에서의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독점 대기업들의 독점적 이익을 고수하려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밀린 개혁정책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유상덕, 1996: 52).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이 ‘약속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적 약자’의 입장을 고려하던 공교육의 기본원리(이를 보장하려는 국가의 정책적 수단을 통한 노력)를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있으므로 해서, ‘악무한적 경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을 가진 그들로서는 교육 결과의 불평등은 물론 종전에 보장되던(형식적으로는 완전하게, 내용적으로는 상당부분) ‘교육기회의 균등’ 조차도 박탈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 소외계층과 지역을 위해서는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면서 ・・・”와 같은 말은 공론(空論)화될 공산이 크다.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를 우리는 ‘고등학교간 학력격차 인정’ 방침¹⁵⁾에서 찾아볼 수 있다. ’74년 이후 시행해 온 고교평준화정책은 학교간의 교육조건을 평등화하여 학교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을 실현한다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보화·세계화시대’의 치열한 국제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등이념의 실현이 아니라 ‘시장의 원리’에 맡겨 경쟁력을 한껏 높여야 한다면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김용일, 1996a).

이러한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시장의 원리’는 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들어갈 경우, 개혁 수행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정책수단의 부재 내지 상실¹⁶⁾로 인하여 맹목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5.31 교육개혁안이 평등지향적인 교육정책을 포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리에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논리로 구축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은 ’80년대 이후 선진국을 필두로 한 ‘교육개혁의 열풍’을 보수주의 또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에 입각한 교육재편전략으로 파악하고 있다.(Goodman, 1995; Fowler, 1995; 최은봉, 1993). 심지어는 제시된 교육개혁의 논거는 실제로 교육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보다는, 정책 제시를 통해 정권 유지 내지 정책기조를 선전하는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품종 소량생산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제상황의 변화나 이 때문에 가열되는 국가간 경쟁의 가속화 현상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적 대처방안이 ‘시장의 원리’에 터해 있다는 사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선회는 교육을 포함

15) 현 정부는 국제경쟁력강화·교육의 수월성 제고 등의 교육개혁 방향이 곧 바로 교육부문 전반의 경쟁력 강화라고 인식한 결과 고교평준화 정책의 포기를 모색해 왔다. 시장의 경쟁원리를 왜곡하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특수목적고나 일부 비평준화 지역 설정 등과 같은 ‘평준화정책 보완’의 차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고교간 학력격차 인정 방침의 친명과 같이 기존의 평준화정책을 버리는 방향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목소리 큰’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고교평준화 정책은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어 웃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이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교육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획일적으로 고등학교를 서열화시켜 새로이 일류고, 이류고, 삼류고가 생겨나고 일류고에 진학하기 위한 고교입시의 부활 등 비교우위인 경쟁현상을 과연 경제 논리를 동원하여 납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김용일, 1996a).

16) 정책수단의 부재는 단순히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축소시키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세계화시대’의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지적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본이 다국적 기업을 통해 세계화되고 자본과 노동이 시장조건에 따라 국경없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적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정책을 자본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되었다. 포디즘 시대의 사회보장 국가는 세계화시대에는 경쟁력강화 국가로 변하고 있는데, 경쟁력 강화국가는 선거과정에 나타난 민의 보다는 자본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 하는 국가인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출현한 경쟁력 강화국가는 자유민주주의를 공동화(hollowing out)하고 있는 것이다.”(이정복, 1996: 14).

한 복지비용 부담에 기업과 국가재정이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사실 이것은 세계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의 심각한 약화에서 기인한 것으로¹⁷⁾, 여기에는 일종의 정치적 선택이 내재해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선택이 교육부문에 미칠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즉, 공교육의 원리에서 확보된 교육기회의 균등의 원리 조차 부정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말해 이미 확보된 대다수 국민의 교육적 권리를 박탈해 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 입안자들이 인용하는 ‘교육의 질’, ‘수월성’, ‘교육의 국가경쟁력’ 등의 개념은 “결국 재정적자를 줄여서 대외경쟁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체들이 정부에 압력을 놓어 학교와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격감시키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원리를 무리하게 학교나 대학에다 적용시킨 것에 불과하다”(김기수·정재걸, 1994: 119)는 지적이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

IV. 결 론

이상의 고찰에서 우리는 교개위가 현재 진행중인 교육환경의 변화를 ‘정보화·지식사회’, 나아가 ‘세계화 시대’로 파악하면서, 교육개혁의 지표를 ‘창조(의)력이 있는 인간 육성’과 ‘교육의 질적 수월성’에 두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표는 ‘세계적 수준의 질 높은 교육’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가 ‘창조력’이라는 점에서 표리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왜냐하면, 탈산업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이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적 자원의 창조력 여부로 판가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진단은 ‘新교육체제’ 수립이라는 교육개혁 방안의 설정으로 이어지는데, 그 기본 특징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 즉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의 확대’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동원된(스며들어 있는) 정당화논리가 다름 아닌 ‘시장의 원리’이다. 그들은 교육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공급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종전의 권위적인 교육체제를 해소하고 박탈당한 교육소비자(학생·학부모)의 권리를 회복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날로 가속화되는 국간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그럴 때만이 더 나은 ‘삶의 질’도 보장된다는 것이다.

17) 윌러스틴은 “세계체제의 사회경제적 토대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구조변동을 보여주는 징후를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설명 가운데 ‘중간계층에 대한 압박’은, 모든 국가의 중간계층이 교육을 사회계층 이동을 위한 최적의 기제라고 생각하면서 교육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매우 의 미심장하다. “···엄청나게 팽창한 중간계층을 개인별로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드는 전 세계의 비용이 너무 커져서 기업들과 국가재정으로는 견딜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복지국가를 되돌리려는 다양한 시도들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이 비용들을 줄이지 않는다면, 국가와 기업들은 죽음과 같은 곤란을 겪거나 잊은 과산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로 이 비용을 줄인다면, 현 세계체제에 가장 강력한 지지를 보낸 바로 그 계층들 사이에서 심각한 정치적 불만이 표출될 것이다.”(고딕의 강조는 연구자, 윌러스틴/ 강문구 옮김, 1996: 199). 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개혁전략의 의미에 관해서는 사파로의 논문에 잘 분석되어 있다.(Shapiro, 1985).

5.31 교육개혁의 정당화논리 탐색

그러나 이러한 개혁방안은 교육의 최종 소비자라 할 수 있는 기업의 권익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한 미래’와는 달리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 실현 여부를 떠나 종전에 고수해 온 평등지향적인 교육정책의 폐기, 즉 ‘교육적 약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개혁 입안자의 논리대로라면, 교육서비스의 선택권은 소비자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인위적인 조치가 가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다수의 소비자의 구매력이 동일할 가능성 거의 없다. 교육시장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은 화폐라는 직접적인 교환수단이 아니라 점수(학생의 성적 내지 학점 등)라는 간접적인 매개물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교육서비스의 질과 양에 대한 선택을 결정하는 점수가 단순히 개인적인 제(諸) 능력에 의해서만이 설명될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설명해 주는 주요변인이라는 많은 연구결과는 이 문제가 그리 간단치만은 않음을 알게 해준다. 즉, 교육시장은 ‘시장의 원리’가 전제하고 있는 ‘공정한 경쟁’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장의 원리’의 적용은 교육기회 및 그 결과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이론적인 의미에서의 ‘완전경쟁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교육의 불평등에 대해 그것이 존재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니라 개선해야 할 문제로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각이 진 역사적 과정을 거쳐 ‘공교육의 원리’로 표현되고, 그 원리의 핵심을 교육의 기회균등(한결음 더 나아가 교육결과의 평등)으로 이해해 온 것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정착한 이래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기 보다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보완해주는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 더 유효하다는 인식의 결과였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80년대 이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에 적용되는 ‘시장의 원리’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여년간의 인류의 귀중한 역사적 경험에 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의 원리’가 과거 국가의 교육에 대한 독점을 일정 정도 완화시켜 줄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보장해 줄 책임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점 또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교육개혁의 정당화 논리(‘시장의 원리’)는 방향 설정이 상당히 잘못된 ‘기업중심적’ 논리이기 때문이다. 일방의 이익을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윌러스틴의 말대로, ‘심각한 정치적 불만’의 표출로 이어지게 될 공산이 크다. 기업의 자본력·정보력이 국가의 그것을 압도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교육개혁에서 ‘공익의 대변자’로서 국가가 선택할 길이 과연 ‘시장의 원리’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 (1994)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제 1차 대통령보고서, 9. 5).
- _____ (1995)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제 2차 대통령보고서, 5. 31).
- _____ (1996a)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Ⅰ)」(제 3차 대통령보고서, 2. 1).
- _____ (1996b)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보고서」(제 1집).
- _____ (1996c)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Ⅲ)」(제 4차 대통령보고서, 8, 20).
- 김기수 (1994) 「교육개혁과 시장논리」, 한국교육신문사, 새교육(통권 제 471호), pp.104~117.
- 김기수·정재걸 (1994) 「교육개혁논의의 철학적 역사적 터잡기」(한국교육개발원 수탁연구 94-10).
- 김용일 (1996a) 「고등학교간 학력격차 인정 방침에 대한 단상」, 고대교육신보(논단, 1996. 10. 25).
- _____ (1996b) 「교육행정개혁과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제 8집), pp.259~284.
- 김식현 (1995) 「세계화와 노·사·정의 의식개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세계화와 노동개혁」(노동대학원 개원기념 정책세미나 자료).
-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1995) 「소비자주권의 교육대개혁론」(서울: 길벗).
- 박세일 (1995) 「세계화 시대의 교육을 위한 발상의 전환: 규제에서 탈규제로」,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소비자 주권의 교육대개혁론」(서울: 길벗), pp.15~35.
- 안기성 (1995) 「한국 교육개혁의 정치학」,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제 3집 제 1호, 1996), pp.1~24.
- 유상덕 (1996)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윤종건 (1996) 「교육개혁 잘해보시오」(서울: 원미사).
- 이주호 (1995)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른 교육개혁 방향」, 나라정책연구회 편저, 「소비자 주권의 교육대개혁론」(서울: 길벗), pp.55~76.
- 이정복 (1996) 「한국정치학의 변화와 발전방향」,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한국 사회과학연구협의회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자료), pp.9~25.
- 장수영 (1995) 「첨단과학기술시대에 대비하는 고등교육개혁」, 한국교육행정학회, 「첨단과학기술

- 『시대에 대비하는 고등교육개혁』(제 23차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pp.1~25.
- 정태수 (1991) 『7·30 教育改革』(서울: 예지각).
- 정범모 (1993)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 임시와 임시교육의 개혁』(서울: 나남).
- 최은봉 (1993) 「국가와 시장 - 일본 교육자유화론의 정치이념적 성격과 한계 -」,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제 27집 제2호 下), pp.305~328.
- Crowson, R., Hannaway J.(1989). 'Introduction and overview: the politics of reforming school administration', in Crowson, R., Hannaway J.(eds), *The Politics of Reforming School Administration : the 1988 Yearbook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sociation*(New York · Philadelphia · London: The Falmer Press), pp.1~12.
- Flowler, Francis C. (1995) 'The Neoliberal Value Shift and Its Implications for Federal Education Policy Under Clinton',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Vol.31, No.1, February 1995), pp.38~60.
- Goodman, Jesse(1995). 'Change without Difference: School Restructuring in Historical Perspective', Harvard Educational Review(Vol.65 No.1 Spring 1995), pp.1~29.
- Kingdon, John W.(1984).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U.S.A.: Harper Collins Publishers).
- Shapiro, H. Svi (1985) 'Capitalism at Risk :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Educational Reports of 1983', Educational Theory(Vol.35, No.1, Winter1985), pp.57~72.
- Tyler, W. (1988) *School Organization : A Sociological Perspective*(London · New York · Sydney: Croom Helm).
- Verstegen, Deborah A. (1994) 'Reforming American Education Policy for the 21th Century,'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Vol.30, No.3, August 1994), pp.365~390.
- Wallerstein, Immanuel (1996) *After Liberalism*, 강문구 옮김, 『자유주의 이후』(서울: 당대).
- Wimpelberg Robert K. and Ginsberg Rick(1989). 'The national commission approach to educational reform', in Crowson, R., Hannaway J.(eds), *The Politics of Reforming School Administration : the 1988 Yearbook of the Politics of Education Association*(New York · Philadelphia · London: The Falmer Press), pp.13~25.

